[별지 제60호의2서식] <신설 2018. 4. 6.>

과태료 재판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위반자</td><td>성 명</td><td>(한 자)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4">결정내용</td><td>법 원 및
사 건 번 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결 정 일 자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결 정 주 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결 정 요 지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「공직선거법」 제261조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재판의 결정에 관하여 통보합니다.

덧붙임 : 과태료 결정문 사본

년 월 일

검 사 ㊞

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</td></tr>
</table>